

## 201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재무제표

이서연(조사1팀 법제조사파트)

### 【질 의】

당사는 12월 결산 법인이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대상 법인입니다. 상법 개정에 따라 상법에도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가 2012년 3월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재무제표는 무엇인지요?

### 【응 답】

현행상법상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나,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재무제표이며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입니다. 이러한 상법과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상법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재무제표로 규정하였으며(개정상법 제447조), 상법시행령(안)에 의하면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이에 해당됩니다(상법시행령(안) 제16조).

또한, 개정상법은 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하여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개정상법 제447조 제2항),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개정상법 제449조).

개정상법에 따르면 정관에 정함이 있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가 포함됩니다(개정상법 제449조의2).

그러나, 개정상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2012년 4월 15일 이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개정상법 시행 이전까지는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인받는 재무제표의 명칭도 현행 상법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안건 부의를 위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대하여는 외감법상 외부감사 절차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개정상법 시행전이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므로 2012년 3월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안건 부의를 위한 이사회에서는 '연결 + 별도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하며 재무제표의 명칭 또한 기존대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단, 주주총회에서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 승인시 연결재무제표를 추가하여 승인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 임원이 퇴임 전후 6개월 이내 이종종목 매매로 이익을 얻은 경우 단기매매차익 해당 여부

김정택(조사1팀 공시제도파트)

### 【질 의】

당사의 임원이던 甲은 2011년 5월 당사의 보통주 5만주를 취득한 후 2011년 8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이후 9월에 甲은 2011년 5월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당사의 우선주 2만주를 처분하여 매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반환대상 차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응 답】

귀사의 질의를 살펴보면 우선 매수시점에는 임원이었으나 매도시점에는 임원이 아닌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에 해당되는지와 이종종목(보통주와 우선주)을 거래한 경우에도 반환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반환대상 거래에 해당된다면 반환대상 차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의 세가지로 나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 중 주요주주의 경우에만 특정증권의 매수 및 매도시점 모두 주요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매도 중 한 시점에만 임직원이면 반환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귀사의 사례에서 甲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

둘째, 이종종목의 매수·매도로 인한 차익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바, 귀사의 사례에서 甲의 보통주 매수(5월)에서 우선주 매도(9월)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이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마지막으로 이종종목의 매수·매도로 인한 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에서 그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귀사의 사례처럼 매수 후 매도인 경우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의 매도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甲이 우선주를 매도한 날의 보통주 최종가격을 우선주의 매도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甲의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하는 산식은 [(우선주 매도일의 보통주 최종가격 - 보통주 매수가격) × 20,000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종종목 뿐만 아니라 이종증권(예 : 보통주와 전환사채 등) 매매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거래에 해당되며, 이 경우 그 특정증권의 가격은 매매일 현재 특정증권 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하고, 그 매매수량은 매매일 현재 당해 특정증권 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연결대상 포함에 있어 실질지배력 판단 여부

백경화(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 【질 의】

당사(A)는 상장회사로서 비상장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갑은 A사와 B사의 지분을 각각 16%, 40% 보유하고 있으며, B사의 등기임원입니다. B사의 대표이사 을은 당사의 비등기임원이며, B사의 등기임원은 갑, 을 외 1인이 있습니다. 또한, 갑과 당사는 B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A)는 B사를 연결대상종속회사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 【응 답】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13, K-IFRS 2012).

귀사가 현재 B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B사를 연결대상종속회사로 보기 위해서는 B사의 재무정책이나 영업정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질지배력’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상황별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나 실질지배력의 보유여부의 판단시 우호지분(갑의 B사 지분 40%)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기준서 제1027호 문단 13 ‘회사가 의결권 50% 이하를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실질지배력 보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단 13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보는 경우

- (1)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2)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4)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B사가 3인의 등기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기업이 지배되고 있고, 귀사가 그 의사결정에서 과반의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A사는 B사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귀사는 B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13년부터는 A사는 B사를 연결해야 합니다.

[IFRS 10, 2013.1.1. 시행(조기적용 가능)]

- ① A사의 의결권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인 경우

$$\frac{A의\ B사\ 보유지분(45\%)}{B사\ 주총참석률(의결권기준)} > \frac{1}{2}$$

- ② 값이 A사에 의결권을 위임하여 A사의 의결권이 과반수가 되는 경우

## 한토막의 여유



### 국내 CEO가 뽑은 2011년 경제뉴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CEO 318명을 대상으로 2011년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뉴스가 무엇이었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21.2%가 '한·미 FTA 비준'을 1위로 뽑았다. 연구소는 "한·미 FTA 비준으로 한국은 경제영토가 확장되고 한·미 기업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자들에게는 미국 시장과 더 가까워져 생기는 기회와 경쟁 심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상위 5개 뉴스가 모두 대외 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밀접한 관계가 경영자의 시각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 CEO가 뽑은 경제뉴스

|                           |                                |
|---------------------------|--------------------------------|
| 1. 한미 FTA 비준              | 6. K-Pop 등 한류열풍으로 '코리아 이미지' 제고 |
| 2. 유럽 재정위기 심화             | 7. 저축은행 사태로 부각된 금융산업의 모럴헤저드 논란 |
| 3.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 8. 가계부채 급증                     |
| 4. 미국 신용등급 강등             | 9. 스마트폰시장 경쟁 격화                |
| 5.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         | 10.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 고공행진          |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